

[양식 제19호]

사망신고서				※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(년 월 일)		성명	한글 (성) / (명)	성별	주민등록번호		
		한자	(성) / (명)	①남 ②여	번 호	-	
① 사망자	등록기준지						
	주소	세대주·관계 의					
	사망일시	년 월 일 시	분(사망지 시각: 24시각제로 기재)				
	사망장소	장소	시(도)	구(군)	동(읍,면)	리	번지
		구분	① 주택 ② 의료기관 ③ 사회복지시설(양로원, 고아원 등) ④ 공공시설(학교, 운동장 등) ⑤ 도로 ⑥ 상업·서비스시설(상점, 호텔 등) ⑦ 산업장 ⑧ 농장(논밭, 축사, 양식장 등) ⑨ 병원 이송 중 사망 ⑩ 기타()				
② 기타사항							
③ 신고인	성명	① 또는 서명		주민등록번호	-		
	자격	① 동거친족 ② 비동거친족 ③ 동거자 ④ 기타(보호시설장/사망장소관리장 등)		관계			
	주소			전화	이메일		
④ 제출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	-		

*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「통계법」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⑤ 사망원인	가	직접 사인			발병부터			
	나	가의 원인			사망까지			
	다	내의 원인			기 간			
	라	대의 원인						
	기타의 신체상황			진단자	① 의사 ② 한의사 ③ 기타			
⑥ 사망종류	① 병사 ② 외인사(사고사 등)	③ 기타 및 불상()						
⑦ 외인사상	사고종류	① 운수(교통) ② 중독 ③ 추락 ④ 의사 ⑤ 화재 ⑥ 기타()	의도성 여부	① 비의도적 사고 ② 자살 ③ 타살 ④ 미상				
	사고일시	년 월 일 시	분(24시각제로 기재)					
	사고지역	① 현주소지와 같은 시군구 ② 다른 시군구(시도, 시군구) ③ 기타()						
	사고장소	① 주택 ④ 공공시설(학교, 운동장 등) ⑦ 산업장 ⑨ 기타()	② 의료기관 ⑤ 도로 ⑧ 농장(논밭, 축사, 양식장 등)	③ 사회복지시설(양로원, 고아원 등) ⑥ 상업·서비스시설(상점, 호텔 등)				
⑧ 사망자	국적	① 대한민국(출생 시 국적취득) ② 대한민국(귀화등 국적취득, 귀화전국적)						
	최종 졸업학교	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(교) ⑥ 대학원이상						
	발병(사고)당시직업		혼인상태	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이혼 ④ 사별				

* 아래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

읍면동접수	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	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
	년 월 일(인)	

*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작성방법		※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① 사망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기준지 :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 주민등록번호 :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 사망일시 : <예시> 오후 2시 30분(×) → 14시 30분(○), 밤 12시 30분(×) → 다음날 0시 30분(○) -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,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, 서면타입 실시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"(서면타입 적용)"이라고 표시합니다. 사망장소 구분: ①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·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⑩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, 선박,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	
② 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할 사항을 기재합니다. 	
③ 신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"○" 표시하되 ④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. 	
④ 제출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출인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 	
⑤ 사망원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에 기재된 모든 사망원인 및 그 밖의 신체상황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. 	
⑥ 사망종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에 기재된 "사망의 종류"를 참고로 기재하되, ② 외인사는 질병 이외의 원인 즉, 사고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, ③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 	
⑦ 외인사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고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의 기재 사항을 동일하게 기재하되 기재된 사항이 없는 경우 사고의 종류, 사고 발생지역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 	
⑧ 사망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, 각급 학교의 재학(중퇴)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"○" 표시를 합니다. <예시> 대학교 3학년 재학(중퇴) → ④ 고등학교에 "○" 표시 사망자의 발병(사고) 당시 직업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 <예시> 회사원(×) → ○○회사 영업부 판촉사원(○) 귀화 등 국적취득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포함합니다. 	

첨부서류	
1.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.	
2.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(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): 아래 중 1부.	
- 사망증명서(동·리·통장 또는 인우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): 증명인이 인우인(2명 이상)인 경우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증사본, 운전면허증사본, 여권사본, 공무원증사본 중 1부 첨부하여야 하며, 증명인이 동·리·통장일 때에는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·리·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요.	
-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.	
- 사망신고수리증명서(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).	
※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	
3.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.	
4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	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	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	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	
5.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: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	

※ 재산상속의 한정승인, 포기의 안내		*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1. 의의	한정승인 -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. : 포기 -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.	
2. 방식	한정승인 -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. : 포기 -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.	
3. 신고기간	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(민법 제1019조제1항) :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(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.	
4. 관할	상속개시지 [피상속인의 (최후)주소지] 관할 법원	